



도서관서비스 평가관리지침

규정번호	3-1-37		
제정일자	2013.07.01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대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학술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지원실 운영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범위) 평가범위는 본대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 도서관서비스와 환경,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개선요구사항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영역) ① 평가대상은 본 대학 도서관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정한다.

② 평가 주요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 만족도
2. 소장 자료 분야별 만족도
3. 도서관 서비스와 환경
4. 도서관 홈페이지
5. 온라인 콘텐츠 제공서비스
6. 기타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③ 각 평가영역의 구체적 평가항목 및 주요지표는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지기) 서비스 평가의 시기는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하고, 평가결과를 조사,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 등급 등은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 작성 및 실사) ① 평가 담당자는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담당자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종합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

다.

- ② 종합정보지원실장은 평가 주요영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